

2026년 R&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
R&D 수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내 기업부설연구소 신설(이전)초기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『2026년 R&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 시행계획』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2월 12일

경기도지사·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신설(이전) 3년 이내의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, 초기 R&D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
- 도내 기업부설연구소 이전(신설)을 통한 경기도 연구역량 강화 및 지역 경제 선순환 제고

□ 지원규모 : 10개 과제 내외 (과제당 연간 최대 1.5억 원 이내)

□ 지원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2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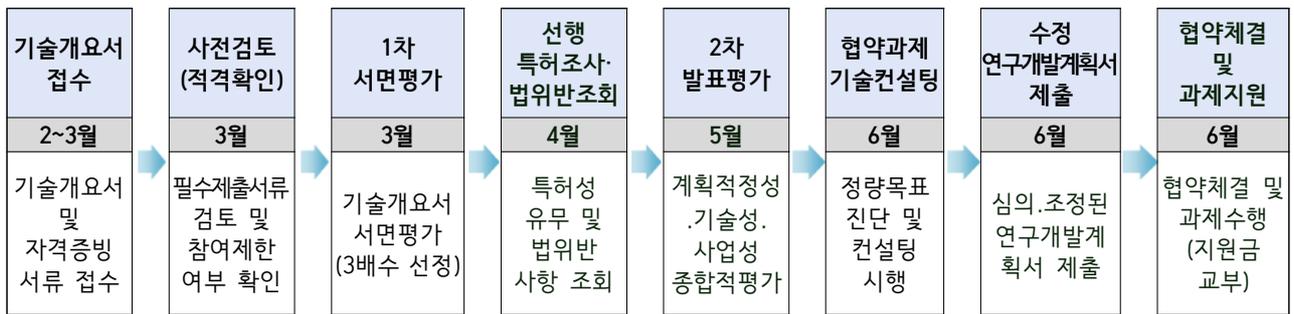
□ 전문기관 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
□ 지원대상

- (연구소 신설) 경기도 내 '주사무소' 또는 '등록공장'을 설치·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신설 3년 이내인 도내 기업
- (연구소 이전) 경기도 내 '주사무소' 또는 '등록공장'을 설치·운영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를 도내 이전한 지 3년 이내인 기업

□ 지원내용 :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건비, 연구기자재·재료비, 시제품 제작비, 시험분석비, 연구활동비 등 지원

□ 추진절차



※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2. 지원금액 및 기간·사업비

□ 지원개요

- 지원대상 :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·대학·연구기관
 - ※ 기업 단독연구개발 또는 도내 대학·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 신청 가능
 - ※ 세부사항은 “3. 신청자격” 확인
- 지원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2년
 - ※ 1차년도 연구개발 종료 후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2차년도 지원 여부 결정
- 지원규모 : 과제당 연간 최대 1.5억원
- 지원내용

구 분	1차년도(2026년)	2차년도(2027년)
지원기간	협약체결 후 1년	협약체결 후 1년
	※ 협약체결은 평가 일정에 따르며 1차년도 최종(단계)평가 결과에 따라 2차년도 협약체결 및 지원 여부 결정(총 협약예정기간 : '26.6~'28.5)	
주관연구기관	[신설]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신설 3년 이내인 도내 기업 [이전] 타 지자체에서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를 도내 이전한 지 3년 이내인 기업 ※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1개소 이내 보유 기업에 한함	
공동연구기관	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	
지원규모	최대 1.5억원 내외/년	최대 1.5억원 내외/년
선정범위	10개 과제 내외	10개 과제 내외

- 1) 도내 기업 : 경기도 내 ‘주사무소’ 또는 ‘등록공장’ 설치·운영 중인 자
 - 2) 경기도 기술개발사업,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,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신청·접수 불가
 - 3)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는 사업 공고기간 내 제출한 인정서 설립신고일을 기준으로 함
- ※ 세부 지원 자격 사항은 하단 “3. 신청자격” 확인

□ 기관부담연구개발비 : 총 연구개발비의 25%(현금+현물) 이상 부담

총 연구개발비	지원연구개발비	기관부담연구개발비
지원연구개발비+기관부담연구개발비	75% 이내 (연간 최대 1.5억원 이내)	25% 이상 (현금 10%, 현물 15%)

※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은 '지원연구개발비'의 10% 이상

주관연구기관 유형	총 연구개발비 대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	기관부담현금액(최소)
중소기업	25%(현금 10%)이상	15,000,000원
중견기업	25%(현금 15%)이상	22,500,000원
대기업	25%(현금 20%)이상	30,000,000원

※ 주관연구기관 유형에 따라 총 지원연구개발비의 10 ~ 20% 이상을 현금 부담해야 함

[참고 1] 연구개발비 계상 예시

- 중소기업이 지원연구개발비 1.5억 원 신청할 경우

구 분	지원연구개발비(A)	기관부담연구개발비		합 계 (총 사업비) (D)
		기관부담 현금(B)	기관부담 현물(C)	
계산식	$A \leq (\text{총 사업비} \times 0.75)$	$B \geq (\text{지원연구개발비} \times 0.1)$	$C = \text{총 사업비} - (\text{지원연구개발비} + \text{기관부담 현금})$	-
금액	150,000,000원	15,000,000원	35,000,000원	200,000,000원
비 중	최대 75%	10%	15%	100%

3. 신청자격

□ 기준일 :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**'공고일 기준(2026.2.12.)'**

□ 세부 자격기준

-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설치·운영 3년 이내 기준

수행기관별	신청자격	
주관연구 기관	기업	<p>「연구소 신설」 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(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)</p> <p>「연구소 이전」 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(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)</p> <p>① 경기도 내 '주사무소' 또는 '등록공장' 설치·운영 ② 공고기간 기준, 경기도 내 '기업부설연구소' 또는 '연구개발전담부서' 신설하여 설치·운영 3년 이내</p> <p>① 경기도 내 '주사무소' 또는 '등록공장' 설치·운영 ② 공고기간 기준, 타 지자체에서 경기도 내로 '기업부설연구소' 또는 '연구개발전담부서'를 이전하여 설치·운영 3년 이내</p> <p>①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 1개소 이내 보유 기업에 한함 ② 연구소(3년) 설립일 기준 : 공고기간 기준 (2023.2.12.~2026.3.9.까지)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도내 신규 설치 또는 도내 이전 기업 ※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 인정서상 설립신고일(최초인정일)을 기준으로 함</p>
	공동연구 기관	대학 및 연구기관 등

[참고 2]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 기준
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
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'기업 부설연구소' 또는 '연구개발전담부서' ※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必

4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

- 온라인 전산 등록 및 제출 : 2026. 2. 23.(월) 10:00 ~ 3. 9.(월) 18:00까지
 -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를 권장하며 **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접수 불가**

□ 신청방법 (온라인만 가능)

- 경기도R&D과제관리시스템(<http://pms.gbsa.or.kr>) 온라인 전산 제출
 - ① 과제책임자 및 실무담당자, 공동연구기관 책임자 회원가입(필수)
 - ② 온라인 과제관리 ▶ 접수관리 ▶ 신청서 ▶ 등록
 - ③ 분야별 공고선택 ▶ 기본정보 및 사업비 입력
 - ④ 기술개요서 및 제반서류 파일 압축하여 첨부파일 업로드

구분	방법	내용	파일명 작성 규칙	예시
기술개요서	단독	기술개요서	2026첫걸음_기업명_기술개요서	2026첫걸음_oo기업_①기술개요서
제반서류	압축(ZIP)	압축할파일	2026첫걸음_기업명_연번.서식명	2026첫걸음_oo기업_⑦공장등록증
		압축 파일	2026첫걸음_기업명	2026첫걸음_oo기업

※ 기술개요서, 제반서류 등 신청서류에 기업(관) 직인 및 서명 날인 후 스캔본 업로드

○ 구비 서류 제출

- 필수서류 누락 및 공고일 이전 발급분 서류 제출 시 사전통보 없이 결격처리 되므로 제출완료 전 반드시 서류 일체 확인 바람
- 기술개요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페이지 수 제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, 평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작성요령 숙지하여 작성 바람
- 기술개요서 및 신청 서류 **제출 이후 수정 불가**
-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불가 (단, 필요시 전문기관이 별도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)

파일 추가 → **'저장'** 버튼 클릭 → **'제출'** 버튼 클릭 → **접수증** 확인

※ '제출' 버튼을 누르지 않아 최종 접수되지 않거나, 파일이 누락된 채로 제출된 경우, 결격 처리되며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구제 불가

□ 제출서류

① 신청 서류 목록(최초 서류제출) ※ 서류 발급일자 유효기간 : '26.2.1.~3.9.(공고월~접수마감일)

구분	연번	서 식 명	해당서류 제출	
			주관기관	공동기관
필수	①	기술개요서 (『서식1』)	0	-
	②	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(『서식2』)	0	0
	③	개인정보 이용(제공·조회) 동의서 (『서식3』)	0	0
	④	사업자등록증명원 ※ 사업자등록증 불인정 ※ 발급방법 : 국세청 누리집(https://www.hometax.go.kr/) ※ 서류 발급일자 유효기간 : '26.2.1.~3.9.(공고월~접수마감일)	0	0
	⑤	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※ 발급방법 :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누리집(https://www.koita.or.kr/) ※ 서류 발급일자 유효기간 : '26.2.1.~3.9.(공고월~접수마감일)	0	0
해당시	⑥	법인등기부등본 ※ 제출대상 : 영리기관(법인사업자) ※ 서류 발급일자 유효기간 : '26.2.1.~3.9.(공고월~접수마감일)	0	0
	⑦	공장등록증 ※ 제출대상 : 경기도 내 '주사무소' 미설치, '등록공장'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제출 필수 ※ 서류 발급일자 유효기간 : '26.2.1.~3.9.(공고월~접수마감일)	0	-

② 발표평가 대상기관 추가 제출 서류 목록(1차 서면평가 통과 기관에 한함)

구분	연번	서 식 명	해당 서류 제출	
			주관기관	공동기관
필수	①	연구개발계획서 (『서식4』)	0	-
	②	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	0	0
	③	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※ 영리기관(기업)만 제출 ※ 최근(법인: 2024년 귀속분, 개인사업자: 2023년 귀속분)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'표준재무제표 증명(국세청 발급분)' 또는 '재무제표확인(회계사·세무사 확인본)' 원본 제출	0	0
	④	NTIS 제재정보 확인서 - 단독개발(주관기관) : 총3부 (본인제재확인서 ①기관대표 ②연구책임자 ③소속기관제재확인서 각 1부) - 공동개발 : 총4부 • 주관기관(기업) : 3부(본인제재확인서 ①기관대표, ②연구책임자, ③소속기관제재확인서 각1부) • 공동기관(대학·연구기관) : 1부(본인제재확인서 ① 연구책임자) ※ 발급방법 :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누리집(http://ntis.go.kr), FAQ 참고	0	0
	⑤	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(『서식5』) ※ 영리기관(기업)만 제출, 5.지원제한 및 선정최소 '과제 중복성' 참조	0	-
	⑥	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및 사실(부존재) 여부 확인서 (『서식6』)	0	-
해당시	⑦	범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(『서식7』) ※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고시(경기도 고시 제2026-8호)에 따른 법 위반 유예대상 47개 범위반 행위에 한하며 미제출시 감점 20% 적용([참고6] 참조),	0	-
	⑧	공동연구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(『서식8』)	-	0
	⑨	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([참고4] 참조)	0	-
	⑩	기타 전문기관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해당 서류	0	0

※ 서면평가 통과 기관에 한하여 추가 제출 안내 예정

5. 지원제외 및 선정취소

- ※ 본 공고문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, 「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」에 따라 지원제외 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
- ※ 주관·공동 연구개발기관(장),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
- ※ 주관·공동 연구개발기관(장),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, 선정 및 협약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**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**될 수 있음
- ※ 기관자격, 접수서류, 수행 과제수, 인건비 계상률, 의무사항, 참여제한과 관련한 사항은 **접수마감일 기준**으로 판단하며, 이외 과제 중복성, 신용 및 기업 상태 등과 관련한 사항은 각 요건 검토별 전문기관 조회시점 기준으로 판단함
- ※ 연구개발기관 외 외부기관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대리작성, 명의도용, 대리 발표 등 부정 행위 확인시 선정 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※ 각 요건의 판단기준일은 **접수 마감일**을 기준으로 함 [2026.3.9.(월)]

(사전) 지원 제외		
구분	내용	
(사전) 지원 제외	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부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- 1개 기업이 본 사업 외 아래 지원사업을 중복으로 접수하는 경우 ※ 경기도 기술개발사업, 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,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사업 - 신청과제가 해당 사업(분야)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-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연구개발계획서 활용한 경우
	접수서류	-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	수행이력 및 참여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, R&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, 경기도 섬유 분야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※ 비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다를 경우 신청 가능 - 기존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, 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한 기관(기업, 대학, 연구기관 등) 중, 2023.2.12.(3년) 이후에 종료한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 연구기관 ※ 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며, 대학 및 연구소는 연구책임자가 다를 경우 제외 - 주관연구기관(장), 공동연구기관(장),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전 지원 제외
	과제 중복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된 세부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중복성(기지원, 기개발)이 판단된 경우 ※ 다만,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 ※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-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http://www.ntis.go.kr)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이미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,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 판단 -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“중단(성실, 불성실)”이나 “불성실수행”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

(사전) 지원 제외	
구분	내용
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 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건비 계상률 해당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비율 기준으로 산정하며, 수행 중인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계상률 및 기관 기본사업* (연구기관만 해당) 참여비율을 포함하여 100%를 초과할 수 없음 ※ 단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제39조에서 정한 정부출연기관, 제57조에서 정한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소속 참여 연구자는 연평균 130% 이내에서 산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* 기관 기본사업 : 정부출연연구기관,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특정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- 인건비 계상률 최소 기준 : 참여연구원 20% 이상,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30% 이상 - 연구책임자(세부주관책임자 포함)로 3개 초과 및 참여연구원으로 5개 초과인 국가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 중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이 될 수 있음
의무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관연구기관, 공동연구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한 경우 사전 지원 제외
(사전) 지원 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의 부도 (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) - 개인의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※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- (채 납)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- (채무불이행) 민사집행법에 기해,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(체불사업자 포함)로 등록된 경우 ※ 체납·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(접수마감일 기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체납·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-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 1,000% 이상인 경우 - 최근 결산기준 전액자본잠식(완전자본잠식) 기업인 경우 ※ 단, 접수마감일 기준 상기 부채비율·자본잠식에 따른 지원제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 ②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에 따른 "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(채권은행 협약)"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(주채권은행에 문의) ③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,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설투자(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·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,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),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·자본 잠식 등의 경우 - 공고 접수 마감일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 기준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이었거나 자본전액잠식 상태였으나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이 1,000%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로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(기관 자체 가결산자료는 제외한다) 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
신용 및 기업상태 ※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	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고에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거나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

선정 취소	
내용	
선정 취소	- 협약체결 전, 선정된 연구기관(주관 및 공동)은 지원연구개발비의 100%에 대해 이행(지급)보증보험 발급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※ 영리기관 및 비영리기관(대학 및 연구소)포함하여 적용 ※ 발급수수료는 연구개발비로 계상(직접비-연구활동비)
	-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
	- 경기도R&D과제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연구개발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
	-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 발생한 경우
	- 이미 개발되었거나 이미 지원된 다른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
	- 신청기관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	-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
	-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수행기간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
	- 기타 전문기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
	-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
- R&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 수행 신청자격(경기도 외 지역으로 주소이전 등)을 상실한 경우	

6. 기술료

-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(주관연구기관, 공동연구기관 등)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
-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“불성실수행”이 아닌 경우,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매출증가액을 기준으로 성공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

[참고 3] 성공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

- 연구개발결과물 직접실시에 의한 매출 발생 ※ 일시납일 경우 40% 감면

징수대상	연구개발과제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3년(회계연도 기준, 종료연도 미포함) 동안 해당 기업의 총 매출액이 지원금의 50배 이상 증가한 기업 (당해연도 말 매출액) - (연구개발과제 종료연도 말 매출액)
산출요율	A(지원금), B(기술기여도), C(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), 50%(징수율 상한)
징수기술료	$0.5 \times A \times B \times C$

-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자와의 실시계약에 의한 기술료 수익 발생

징수대상	연구개발과제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3년(회계연도 기준, 종료연도 미포함) 이내의 기간에 기술이전 수익이 발생한 기업
산출요율	A(기술이전수익), B(기술기여도), 50%(징수율 상한)
징수기술료	$0.5 \times A \times B$

※ 성공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은 「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」을 따름

7. 선정평가기준 및 추진절차

□ 평가기준

○ 사전검토(최소자격확인)

- 신청자격 적격 확인을 위한 최소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확인
-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공장등록증,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 인정서 등

[지원제외]

-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(경기도 소재 등)
- ②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 등에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
○ 서면평가(3배수)

-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며, 기술개요서를 토대로 평가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사·평가
- 고득점 순으로 목표 지원기업 수의 3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
- 작성 요령(분량 제한 등) 미준수 시 평가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- 평가지표 : 연구개발 지원 필요성(20점), 연구개발 계획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가능성 (40점), 연구인력 및 인프라(20점), 사업화 계획(20점)

○ 선행특허조사(발표평가 대상 과제)

- 과제별 기존 기술 관련 선행문헌과의 유사도 및 기술의 진보성·차별성 여부 분석 등 특허성 여부 조사 ⇒ 발표평가위원회에 평가 참고자료로 제공

○ 발표평가

-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며,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종합적으로 심사·평가
- 연구개발 인프라, 사업화(양산)능력 등 현장 확인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실시
-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10개사를 지원과제로 선정
- 작성 요령(분량 제한 등) 미준수 시 평가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- 평가지표 : 기술혁신성 및 차별성(20점), 개발계획의 적정성(20점), 목표달성 가능성(30점), 개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및 영업·마케팅 역량(30점)
- 가산점 : 발표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부여되며 최대 가산점 5점 이내 중복 적용 가능
- 우대사항 : 발표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적용하며 무역 위기 관세 대응 R&D 과제(6대 관세품목)

[대상품목]

☞ 철강, 알루미늄 / 자동차(부품) / 구리(가공품) / 목재 / 반도체 / 의약품(기기)

※ 대상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[4-3.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및 대응전략] 작성필수

[참고4] 가산점 적용 대상 및 기준

※ 증빙서류 발급 유효기간 : 접수마감일(2026.3.9.)

① 3점

- 도내 대학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

② 2점

- 경기도 「산업단지 RE100」 참여기업이 주관하는 과제
- 경기도 「유망중소기업」이 주관하는 과제
- 경기도 「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기업」이 주관하는 과제
- 경기도 「주 4.5일제 참여기업」이 주관하는 과제
- 경기도 「중소기업 ESG 진단평가 우수기업」이 주관하는 과제
- 「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」이 주관하는 과제
- 경기도 「임팩트 유니콘 기업」이 주관하는 과제
- 경기도 「가족친화 인증기업」이 주관하는 과제

③ 1점

- 기타 경기도지사가 인증(지정)한 기업이 주관하는 과제

- 가산점 적용기준

- ① 가산점은 발표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며 최대 가산점 5점 이내 중복적용 가능
- ② 가산점은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를 제출한 주관연구기관에 한하여 적용
- ③ 「도내 대학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」의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

○ 법 위반 여부 검토(발표평가 대상 과제)

- 공고일 기준 2년 내 11개 분야 중 법위반 내역이 있는 기업은 발표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하여 최종점수 산정 ([참고5] 적용법률 참조)
- 단, 11개 법 위반 사실 중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(치유가 완료된 행위 또는 치유예정 행위)에 대하여 조건부 유예 적용하여 “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” 제출 시 감점 미적용 ([참고6] 유예대상 목록 참조)
- ※ 이행각서 미제출 시 유예없이 총점의 20% 감점 적용

[참고5] 법위반 관련 적용법률(경기도고시 제2026-8호)

적용법률		내용
I 공정	① 공정거래법	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,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,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
	② 하도급법	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(原事業者)와 수급사업자(受給事業者)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, 균형발전
	③ 표시광고법	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·광고를 할 때 부당한 표시·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
II 노동	④ 근로기준법	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,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기여
	⑤ 산업안전보건법	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
III 환경	⑥ 폐기물관리법	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기여
	⑦ 대기환경보전법	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(危害)를 예방,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·보전
	⑧ 소음진동관리법	공장·건설공사장·도로·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·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, 소음·진동을 적정하게 관리
IV 납세	⑨ 물환경보전법	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(危害)를 예방, 하천·호소(湖沼)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·보전
	⑩ 국세기본법	국세,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·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 과세(課稅),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
	⑪ 지방세기본법	

[참고6] 법위반 사실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 목록 (경기도 고시 제2026-8호)

구분	법령	법위반 행위
1	공정거래법	• 지주회사 설립 불성실신고
2	공정거래법	•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 불성실신고
3	표시광고법	• 공정위 조사에 불출석
4	근로기준법	• 노동위, 근로감독관에 대한 불성실 보고
5	근로기준법	• 법령 등 주요 내용 게시 의무 위반(취업규칙 등에 관한 열람보장 위반)
6	근로기준법	• 사용증명서 발급 위반 (미발급)
7	근로기준법	• 근로자명부 작성 위반 (미작성)
8	근로기준법	• 계약서류 보존 의무 위반(계약서류 미보존)
9	근로기준법	•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의무 위반 (대장, 명세서 미작성)
10	근로기준법	• 연소자 증명서 비치 위반(미비치)
11	근로기준법	•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(취업관련 규칙의 신고 미이행)
12	산업안전보건법	• 산업안전지도사 등록, 등록갱신 미이행
13	산업안전보건법	• 산업지도사의 보증보험 미가입 등 필요조치 미이행
14	산업안전보건법	• 산업지도사의 직무 수행 중 작성한 서류 등예의 기명 날인 서명 미이행
15	산업안전보건법	• 중대재해 사실의 불성실 보고
16	산업안전보건법	•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 참여 의무 위반(근로자대표 참여 배제)
17	산업안전보건법	• 산업재해 발생 불성실 보고
18	산업안전보건법	• 위생시설 설치장소 미제공 및 시설 이용 비협조
19	산업안전보건법	• 휴게시설 미설치
20	산업안전보건법	•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불이행
21	산업안전보건법	•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위반
22	산업안전보건법	•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위반 (책임자 미지정)
23	산업안전보건법	•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위반 (미작성)
24	산업안전보건법	• 안전보건교육 미실시
25	산업안전보건법	• 근로자 대표의 참석의무 미이행
26	산업안전보건법	• 불성실 보고
27	폐기물관리법	• 전용용기제조업 등록 불성실 신고
28	폐기물관리법	• 불성실 신고 보고를 통해 적합성 확인 구득
29	폐기물관리법	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·장비에 관한 불성실 신고
30	폐기물관리법	• 폐기물의 인계·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불성실 입력
31	폐기물관리법	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불성실 신고
32	폐기물관리법	•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입력
33	폐기물관리법	• 유해성 정보자료의 불성실 작성
34	폐기물관리법	•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미제공
35	소음진동관리법	•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의 불성실 신고

[참고6] 법위반 사실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 목록 (경기도 고시 제2026-8호)

구분	법령	법위반 행위
36	소음진동관리법	• 변경신고의 불성실 신고
37	소음진동관리법	• 생활소음·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의 불성실 신고
38	소음진동관리법	• 소음허용기준 위반 운영자의 개선사항 불성실 보고
39	소음진동관리법	•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실시
40	물환경보전법	•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시작 불성실 신고
41	물환경보전법	•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의 불성실 신고
42	물환경보전법	• 비점오염원 설치의 불성실 신고
43	물환경보전법	•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의 불성실 관리
44	물환경보전법	• 공유수역 관리 규정의 미이행
45	물환경보전법	• 폐수의 인계·인수에 관한 내용의 불성실 입력
46	물환경보전법	•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시행
47	지방세기본법	•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의 성실신고 방해 행위

- **과제선정** : 발표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경기도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

※ 심의·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

8. 기타 공지사항

- **본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(기관)에 있음**
- **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요령 등을 적용**
 - 「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」
 - 「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·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」
 - 「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」
- **사업설명자료**
 - 내용 : 2026년도 경기도 R&D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온라인 접수요령 등
 - 링크 : 경기도R&D과제관리시스템(<http://pms.gbsa.or.kr>)

□ 온라인 Q&A 설명회 개최

- 일시 : 2026. 2. 25.(수) ※ 일정 변동 가능
- 내용 : 2026년도 경기도 R&D 사업 관련 질의응답
- 링크 : 경기도R&D과제관리시스템(<http://pms.gbsa.or.kr>) 공지사항 게시

□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연구기관, 공동연구기관, 대표이사, 과제책임자 등)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

-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
-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기준에 따른 법위반 사실 조회 (경기도 고시 제2026-8호 참조)
- 기존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 제목,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

□ 이행보증보험 가입

-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연구기관(주관 및 공동)은 지원금의 100%에 대해 협약 전 이행(지급)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,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- 발급수수료는 연구비(직접비-연구활동비)로 계상
※ 영리기관 및 비영리기관(대학 및 연구소) 포함하여 적용

□ 범부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(RCMS) 연계 (필수)

- 연구비는 범부처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(RCMS)을 통하여 가상 계좌로 교부되며 선정기업은 RCMS 연계 가능한 참여 은행의 계좌 및 법인카드 (사업비 전용카드)를 필수로 사용해야 함

□ 연구비 부정사용시 제재

-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시 제재부가금 부과
※ 『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』 제8조부터 9조등에 의거 부정 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
- 부정행위 기업 및 연구책임자 명단 공개
- 연구부정행위자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영구배제 (원스트라이크 아웃제)

□ 기타사항

- 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·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,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함
-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할 수 있음

9. 문의처

□ 사업담당 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케일업본부 R&D지원팀

☎ 031)-259-6783, 6785 / ✉ rnd@gbsa.or.kr

※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-mail로 문의바랍니다

서 식	1. 기술개요서
	2. 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
	3. 개인정보 이용(제공·조회) 동의서
	4. 연구개발계획서
	5. 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
	6.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및 사실(부존재) 여부 협약서
	7. 기업의 범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
	8. 공동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
별 첨	1.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
	2. 산업기술분류표
	3.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. 끝.